

「구미시 도박중독 예방 및 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」

검 토 보 고 서

1. 발 의 자 : 정지원 의원 외 11명

2. 제안이유

- 도박중독으로 발생하고 있는 사회 전반에 걸친 문제점을 예방하고, 중독자에 대한 치료 지원을 통해 모든 시민이 건강한 사회에서 보다 행복한 삶을 살도록 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- 목적 및 정의 규정(안 제1조~2조)
- 시장의 책무 및 시행계획 수립(안 제3조~4조)
- 예방교육·홍보 및 치료와 재활 지원(안 제5조~6조)
- 지역사회 협력체계 및 업무의 위탁(안 제7조~8조)
- 비밀준수 의무(안 제9조)

4. 참고사항

- 관계법령 : 「지방자치법」, 「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」, 「지역보건법」
- 예산조치 :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참조
- 기 타 : 조례안 예고(2022. 11. 18. ~ 11. 23.) 결과 의견 없음.

5. 검토의견

○ 본 조례안은

- 도박 중독자와 그 가족들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관련 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안으로,

○ 검토 결과,

- 국립정신건강센터의 2016년도 정신질환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일상 생활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하는 <병적 도박>의 유병률은 0.5%로 우리 시의 20세 이상 60세 이하 성인 인구 약 30만 명 (2022년 10월 기준)을 기준으로 가정하면 우리 시에서 도박 관련 치료와 전문 상담이 필요한 대상은 1천 5백여 명으로 추정됨.
- <구미중독관리 통합지원센터>의 도박중독 질환자의 사례관리 현황은 20여 건으로 치료·상담이 필요한 대상자에 비하여 현격히 낮은 숫자를 보임. 이번 조례 제정으로 도박중독과 그로 인한 우리 시의 사회 비용을 낮출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것으로 예상되며, 집행부에서는 도박중독에 대한 시민의 관심을 환기시키고 도박 치료·상담 대상의 효율적 발굴에 대한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임.